#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**1. 개정이유**

현재 운영중인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에 대하여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2004년 6월 30까지 1년 6개월 연장승인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**2. 주요골자**

○ 부칙(2000. 12. 7 조례 제1654호) 제2항 개정
· 집행기관의 정원2명(정보화사업추진) 적용시한 연장
- 당초 : 2002. 12. 31까지
- 개정 : 2004. 6. 30까지(1년 6개월간 연장)

**3. 신·구조문 대비표** : 별첨

**4. 참고자료**

○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정원승인
(도 행정12200-12056, 2002.12.12)
○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(2000.12. 7 조례 제1654호) 제2항중 "2002.12.31"을 "2004. 6.30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부칙(2000.12. 7 조례 제1654호) | ---------- |
|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①----------. |
| 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(정보화사업추진)은 **2002.12.31**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 | ②----------**2004. 6.30**----------. |